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3
----------	------

제출년월일 : 2012. 1. 18.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9. 7.31.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점용요율이 기존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개정되었고, 이어서 2011. 1.1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 25개구 중 8개구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이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대부료 요율을 국유지 및 사유지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행정의 형평성 유지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내용의 반영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는 구유지 대부료 요율 완화 (안 제25조 제3항)

- 1)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대부료 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개정 전	개정 후	관련 조항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	제25조제3항제3호

나. 교환차금 분납제도 신설 (안 제34조의2)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그 교환차금(마포구가 수령하는 경우)을 5년 이내에서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신설(서울시 조례와 일치)

다. 관련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

개정 내용	관련 조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의결시기	안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 및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명칭 변경	안 제20조
◦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변경됨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명칭 변경	안 제24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변경됨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	안 제24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34조, 안 제35조
◦ 인용법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	안 제28조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분할납부 가능한 대부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최소금액을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로 변경	안 제31조, 안 제88조

라.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 용어 순화 등을 반영

- 1)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 2) “동”을 “같은”으로 개정 등 법률순화 용어로 변경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2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9조, 제21조, 제32조, 제45조 및 제8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및 제36조의2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1.11.3. ~ 2011.11.23.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 1. 17)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유재산”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실태조사시”를 “실태조사 시”로 하고, “대부시에는”을 “대부 시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관리계획”을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동 시설물”을 “같은 시설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용허가 하고자”를 “사용허가하고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및 영 제21조”를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 받은”을 “사용·수익허가받은”으로, “전대 받은”을 “전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 ”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를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사용중인”을 “사용 중인”으로 한다.

제24조제2호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파트형 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마포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전 제3항) 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중전 제4항)제5호 중 “위탁운영 하는”을 “위탁운영하는”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해당층”을 각각 “해당 층”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아파트형 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대부료의 등의 감면)”을 “(대부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바목 중 “지역내로”를 “지역 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제31조제2항제3호 중 “9월 이내 4회”를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월 이내 2회”를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제31조제3항제3호 중 “9월 이내 4회”를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유예 하거나”를 “유예하거나”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 단서”를 “영 제39조 제1항”으로, “연4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분할납부 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6퍼센트”를 각각 “연 6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분할납부 하게”를 각각 “분할납부하게”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제1호 중 “분양 받은”을 “분양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용지내의”를 “용지 내의”로 한다.

제36조제4호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별표1”을 각각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축시”를 각각 “신축 시”로 한다.

제44조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할”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신축하고자 하는”을 “신축할”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8조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59조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매입하고자 하는”을 “매입할”로 하고, “교부 받아”를 “교부받아”로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를 각각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규칙이”를 각각 “규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령여부”를 “수령 여부”로 한다.

제67조제7호 중 “등재 된”을 “등재된”으로 한다.

제70조제8항 본문 중 “연2회”을 “연 2회”로 한다.

제71조제1항, 제81조제2항, 제82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2항 중

“규칙이”를 각각 “규칙으로”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 중 “제1항에”를 각각 “제1항에도”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같음 한다.”를 “같음한다.”로 한다.

제85조 중 “인계전일”을 “인계 전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부과·징수하고자 할”을 “부과·징수할”로 하고,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3년 12회 이내”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과 할”을 “초과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u>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u>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u> ----- ----- -----</p>
<p>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u>공유재산</u>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조(관리책임) ① ----- ----- <u>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실태조사) ①·② (생략)</p> <p>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u>실태조사</u>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u>대부시에는</u>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타인의 토지 안에</u>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p> <p>5. (생략)</p>	<p>제6조(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실태조사 시</u> ----- ----- ----- <u>대부 시에는</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다른 사람</u>----- -----</p> <p>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p>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p>	<p>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포함한다)----- ----- ----- ----- -----</p>
<p>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생략)</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p>	<p>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같은 시설물 ----- -----</p>
<p>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p>	<p>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 -----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 ----- -----</p>

현행	개정안
<p>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 -----.</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u>사용·수익허가</u>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u>전대 받은 자</u>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④ <u>법 제27조제2항</u>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u>일반경쟁입찰</u>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u>법 제27조제2항</u> 및 <u>영 제21조</u>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u>규정</u>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p> <p>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② (생략)</p> <p>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u>사용중인</u>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사용·수익허가</u> 받은 ----- ----- ----- <u>전대 받은</u> ----- ----- -----</p> <p>④ <u>법 제27조제4항</u>----- ----- ----- ----- -----.</p> <p>⑤ <u>일반입찰</u>----- ----- <u>법 제27조제4항</u> <u>및 영 제21조에 따른</u> ----- ----- -----.</p> <p>⑥ ----- <u>규정</u>에도 <u>불구하고</u> ----- -----</p> <p>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사용 중인</u> ----- -----</p>

현행	개정안
<p>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p>	<p>----- ----- -----</p>
<p>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생략)</p> <p>1. (생략)</p> <p>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u>지방산업단지</u>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p> <p>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u>아파트형 공장</u>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p> <p>4. ~ 6. (생략)</p>	<p>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일반산업단지</u> -----</p> <p>3. ----- ----- <u>지식산업센터</u> ----- -----</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25조(대부료 등의 요율) ① ~ ② (생략)</p> <p><신설></p>	<p>제25조(대부료 등의 요율)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마포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u>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1. ~ 2.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마포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 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 라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 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 의 1,000분의 15이상,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 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 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 상으로 한다.</p> <p>4. (생략)</p> <p>④ (생략)</p> <p>1. ~ 4. (생략)</p> <p>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창업·육 성관련 법령에 따라 마포구에서 설 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산 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p> <p>⑤ (생략)</p> <p>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 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p>	<p><삭제></p> <p>4.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위탁운영하는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현행	개정안
<p>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 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p>	<p>----- ----- ----- <u>계산식</u> ----- -----</p>
<p>{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u>해당층의 총면적</u>)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u>해당층의 총면적</u>)}</p>	<p>----- ----- ----- <u>해당 층</u> ----- ----- ----- ----- ----- ----- <u>해당 층</u> -----</p>
<p>⑤ (생략)</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마포구가 건립한 <u>아파트형 공장</u>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⑥ ----- <u>지식산업센터</u>를 ----- ----- -----.</p>
<p>⑦ (생략)</p>	<p>⑦ (현행과 같음)</p>
<p><u>제28조(대부료의 등의 감면)</u> ① (생략)</p>	<p><u>제28조(대부료의 감면)</u> ① (현행과 같음)</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마. (생략)</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u>지역내로</u> 이전하는 사업</p>	<p>바. ----- ----- ----- <u>지역 내로</u> -----</p>
<p>사. (생략)</p>	<p>사. (현행과 같음)</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p> <p>가. ~ 바. (생략)</p>	<p>3. ----- ----- -----.</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지 내 또는 <u>아파트형 공장</u> 내의 공유재산</p> <p>② (생략)</p> <p>③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 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p> <p>제31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략)</p> <p>② 대부료가 <u>50만원</u>을 초과하거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u></p> <p>2. <u>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u></p> <p>3. <u>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u></p> <p>③ (생략)</p> <p>1. <u>50만원 이하 : 3월 이내 2회 분납</u></p>	<p>사. ----- -----v----- <u>지식산업센터</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 ----- ----- ----- -----.</p> <p>제31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00만원</u>----- ----- ----- -----.</p> <p><삭제></p> <p>2. <u>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u></p> <p>3. ----- <u>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u> -----</p> <p>③ (현행과 같음)</p> <p>1. ----- <u>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u> -----</p>

현행	개정안
<p>2. 5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p> <p>3. 100만원 초과: 9월 이내 4회 분납</p>	<p>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p> <p>3.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마포구가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5. (생략)</p>	<p>④ -----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 ----- ----- ----- - 유예하거나 -----</p> <p>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 ----- ----- 연 4퍼센트----- 분할납부하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지식산업센터, ----- ----- ----- ----- -----</p> <p>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② ----- ----- 연 6퍼센트----- ----- 분할납부하게 ----- -----.</p>
<p>1. ~ 2. (생략)</p> <p>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신설></p> <p>제35조(조성원가 매각) (생략)</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 ----- 연 6퍼센트----- ----- 분할납부하게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분할납부하게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4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35조(조성원가 매각) (현행과 같음)</p> <p>1. -----</p>

현행	개정안
<p>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p> <p>5. ~ 7. (생략)</p>	<p>----- ----- ----- ----- 범위에서 ----- -----</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u>별표1</u>의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u>별표1</u>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u>신축시</u> 직 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u>별표1</u>의 기준을 준용한다.</p> <p>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u>신축시</u>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u>별표1</u>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 ----- <u>별표 1</u>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 <u>별표 1</u> ----- ----- <u>신축시</u> ----- ----- ----- <u>별표 1</u> -----</p> <p>③ ----- <u>신축시</u> ----- ----- <u>별표 1</u> ----- -----</p>
<p>제44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44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u>건축할</u> ----- ----- -----</p>
<p>제45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u>신축하고자 하는</u> 때에는 가급적 예</p>	<p>제45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 <u>신축할</u> -----</p>

현행	개정안
<p>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8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p> <p>제59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3에 따른다.</p>	<p>----- 범위에서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8조(물품의 분류) -----</p> <p>----- 별표 2 -----</p> <p>제59조(물품의 정리구분) -----</p> <p>----- 별표 3 -----</p>
<p>제63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p> <p>제64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주관부서장은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p>	<p>제63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매입할 -----</p> <p>----- 교부받아 -----</p> <p>-----</p> <p>제64조(기증품의 취득) ① -----</p> <p>-----</p> <p>-----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p> <p>-----</p> <p>② -----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p> <p>-----</p> <p>③ -----</p> <p>-----</p> <p>----- 규칙으로 -----</p> <p>-----</p> <p>----- 수령 여부 -----</p> <p>-----</p>

현행	개정안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u>규칙</u>이 정하는 기증품수량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7조(물품의 가격) (생략)</p> <p>1. ~ 6. (생략)</p>	<p>④ ----- ----- ----- <u>규칙</u>으로 ----- ----- -----</p> <p>제67조(물품의 가격)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u>등재</u>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p> <p>제70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⑦ (생략)</p> <p>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u>연2회</u>(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p> <p>제71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u>규칙</u>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76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생략)</p> <p>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는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u>제1항</u>에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p>	<p>7. ----- ----- <u>등재</u>된 ----- ----- -----</p> <p>제70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u>연 2회</u>----- ----- -----</p> <p>제71조(불용품의 폐기) ① ----- ----- ----- <u>규칙</u>으로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6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1항</u>에도 ----- -----</p>

현행	개정안
<p>제78조(장부의 작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u>같음</u> 한다.</p> <p>제80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78조(장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같음</u>한다.</p> <p>제80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 ----- ----- -----</p>
<p>제81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략)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u>규칙</u>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③ (생략)</p>	<p>제81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규칙</u> <u>으로</u> ----- ----- ③ (현행과 같음)</p>
<p>제82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0조 및 제81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u>규칙</u>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되 1통은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p>	<p>제82조(물품검사서) ① ----- ----- ----- <u>규칙으로</u>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85조(인계의 절차)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u>인계전일</u>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p>	<p>제85조(인계의 절차) ----- ----- <u>인</u> <u>계 전일</u>----- ----- -----</p>

현행	개정안
<p>제87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87조(변상금의 부과) ① ----- ----- 부과·징수 할 ----- ---- <u>규칙으로</u> ----- -----</p> <p>② ----- ----- <u>규칙으로</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8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생략)</p> <p>1. <u>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u></p> <p>2. <u>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u></p> <p>3. <u>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u></p> <p>4. <u>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u></p> <p>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p>	<p>제88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2. <u>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u></p> <p>3. <u>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u></p> <p>4. ----- <u>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u> -----</p> <p>② ----- ----- ----- <u>규칙으로</u> ----- ----- -----</p> <p>제8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p>

현행	개정안
<p>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1. ~ 2.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초과할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